

- 탄현면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-
최종합격자 결정공고

탄현면 농지이용실태 조사원(기간제근로자)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8일
탄 현 면 장

1. 최종합격자 명단(접수번호- 핸드폰 끝 4자리)

02-5457, 03-8636 이상 2명

2. 최종합격자 서류제출

가. 제출일자: 2026. 8. 28.(금) ~ 8. 31.(월) 09:00 ~ 18:00

※ 제출서류 중 건강검진결과서는 9월 5일까지 제출

※ 근로계약체결일 / 근무기간: 2026. 9. 1.(화) / 2026. 9. 1.~ 12. 31.

나. 제 출 처: 탄현면 산업팀

다. 제출서류

- 1) 인사기록카드(사진부착) 1부. [붙임서식 1]
- 2) 서약서 1부. [붙임서식 2]
- 3)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. [붙임서식 3]
- 4)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. [붙임서식 4]
- 5)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. [붙임서식 5]
- 6) 가족관계증명서 1부.
- 7)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.
- 8) 건강검진결과서(국가건강검진결과 가능) 1부.

3. 합격자 유의사항

가. 합격자가 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범죄경력 조회 등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나. 문의사항은 탄현면 산업팀(☎031-940-8100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인 사 기 록 카 드 (제5조제2호 관련)

성 명	한글		최 초 고용일		사 진	
	한자					
생년월일			세대주와의 관계	의		
소 속			담당업무			
주 소				전화	자 택	
					휴대폰	
병 역 사 항	군 별	계 급	군 번	병 과	입대일	전역일
가족사항				전 력		
관계	성명	생년월일	직 업	근무기간	근무처	담당업무
				~		
				~		
				~		
				~		
학 력	부 터		까 지		학교명 및 전공학과	
자 격 면 허						
년 월 일	종 별(명칭)		시 행 청	년 월 일	종 별	시 행 청
경 력	부 터	까 지	소 속		담당업무	비 고
기타사항						

서 약 서(제13조제1항 관련)

본인은 탄현면(부서명) 농지이용실태 조사원(기간제근로자)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, 퇴직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2.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.
3. 출·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.
4. 파주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5.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.

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6. . .

서약자 : (서명 또는 인)

탄현면장 귀하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탄현면 농지이용실태 조사원(기간제근로자)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파주시 공무원·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※ 단 개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(범죄경력) 조회 대상 시설(직종)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음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2013. 7. 1. 「민법」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)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경력 또는 학력,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
11.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2026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탄현면장 귀하

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

성명 :

생년월일 :

주소 :

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·열람하였으며, 조회 결과 「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」 제12조(결격사유)에 위배되는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향후,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,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.

2026. . .

성명 : _____(서명)

탄현면장 귀하

※ (범죄경력 자료 조회·열람 방법)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(<http://crims.police.go.kr>)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